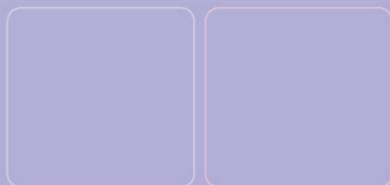


# 독일의 육아정책

| 이명환 · 박수연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독일의 육아정책

| 이명환 · 박수연 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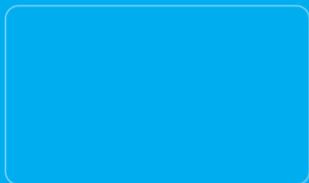


# 독일의 육아정책

| 이명환 · 박수연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인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일 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 간행될 세계의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에 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호주와 영국, 2008년도에는 미국과 캐나다, 2009년도에는 핀란드와 프랑스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의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CONTENTS

## 목차

### 1장

서론 · · 04

### 2장

독일의 구조적 특징

1. 개요 · 07
2. 인구와 언어 · 09
3. 출산율과 기대여명 · 12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16

### 3장

독일의 보육 · 유아교육 정책

1. 보육 · 유아교육 정책의 배경 및 연혁 · 17
2. 독일의 교육제도 · 21
3. 교육자(Erzieher/Erzieherin) 양성과정 · 23
4. 보육교사(Kinderpfleger/Kinderpflegerin) 양성과정 · 28
5. 재교육(Fortbildung) · 30
6. 보육 · 유아교육 정책 현황 · 34
  - 가. 보육관련 법규
  - 나. 보육서비스 현황
  - 다. 행정체계
  - 라.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규정
  - 마. 육아지원기관의 유형 및 교육적 특징



## 4장

### 독일의 휴가제도 및 현금지원

1. 휴가 및 휴직제도 • 65
  - 가. 모성보호
  - 나.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
2. 현금지원 및 조세정책 • 72
  - 가. 아동수당
  - 나. 아동수당보조금
  - 다. 아동세금공제
3. 기타 • 76
  - 가. 자녀의 질병 시 질병수당 및 유급휴가
  - 나. 양육기간의 연금 산입
  - 다. 양육비 세금공제

## 5장

### 맺음말 • • 78

## 참고문헌

• • 82

## 서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이념에 따라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된 이후, 1990년 공식적인 통일을 이루기까지 약 40년간 분단국가 체제가 지속되었다.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은 각기 추구하는 가족정책이 상이하였는데, 서독은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였고, 동독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보육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또한 동독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가족정책을 추진해 온 반면, 서독은 집권당의 정책 노선에 따라 가족정책의 방향이 크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이진숙·신지연·윤나리 공저, 2010: 346). 즉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기민련의 집권 시는 전통적인 성분업과 가족의 양육책임이 강조되었으며, 1969년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양성평등을 견지하는 사민당의 집권 시에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기혼여성의 일과

---

가정의 양립 지원과 아동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1980년대 경제위기로 심화되자 서독은 보수적인 가족정책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그러나 1990년 통독 이후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서독의 보수적인 가족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부터 가족지원은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1998년 사민당의 집권을 계기로 저출산으로 인한 순수 독일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 등으로 가족지원의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통독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게 되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1% 대에 머물자 2000년대 후반에는 독일 인구가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2005년에는 신생아 수가 1945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대졸 학력자의 42%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낮 12시에 문을 닫는 반일제 유치원과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퇴근시간에 맞추어 오후 늦게까지 연장하고자 시설을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1996년 제정된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은 3~6세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전체의 92.6%에 해당하는 유아가 유치원 및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유아가 유아원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는 독일 연방전체의 23.1%에 불과하며, 특히 구서독 지역은 17.4%로 취원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

---

절 탁아시설이 발달했던 구동독지역의 상황은 구서독 보다는 훨씬 높은 48.1%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서독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족의 양육 책임을 강조해 왔으나, 통독 이후로는 저출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독일의 인구 사회구조적인 특징을 다루고, 다음으로 교육제도 및 교육자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대표적인 육아지원정책 내용과 즉 보육·유아교육정책, 휴직제도 등 휴가정책과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육아지원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독일의 구조적 특징

### 1. 개요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하며 여러 영주와 선제후가 다스렸던 나라들이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거쳐 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41년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되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남부로는 알프스 산맥이 그 경계를 이루어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인접하여 있고, 북부는 북해와 발트해로 국경이 구분되어 덴마크와 스웨덴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와 인접하여 있고, 동쪽으로는 폴란드,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

---

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전통, 아름다운 경치와 매력적인 도시가 많다. 이러한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주한독일대사관, 2005).

독일연방공화국의 면적은 357,022km<sup>2</sup>이다. 남북 최장 길이는 867km 이고, 동서 최장 길이는 640km이다. 독일의 지형은 매우 다양하며 남북으로 크게 4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의 기후는 대서양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편서풍이 부는 기후대에 속한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저지대가 18℃ 남쪽의 분지는 20℃ 정도이며, 겨울의 평균기온은 저지대가 1.5℃, 고지대는 영하 6℃ 정도이며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나, 봄철인 4월에도 눈이 내릴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일년 내내 비가 조금씩 자주 내리는 날씨가 될 수 있다.

한편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독일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관심 그리고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책임의식을 지닌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도야(Bildung)시키는 데 있다.

또한 독일은 사회복지정책이 잘 정착된 선진국 중 하나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는 독일의 안정된 정치, 경제, 교육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 패전의 영향으로 국제정치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유럽 선진국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였으며, 경제 부문에서도 단연 선도국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받길 원하는 모든 국민

---

에게 초등에서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과 학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 2. 인구와 언어

**독**일은 통일 이후로 EU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 약 8,200만 명(2009. 12. 31. 기준)이 독일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 가량이 구동독 지역에 살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순수 독일인 비율은 81%, 외국인 비율은 9%, 독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민 가정이나 혹은 후기 이주민집단의 비율은 10%이다. 약 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은 독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구 유입과 자녀 출산은 독일 국민의 출산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 인구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약 1/3인 2,500만 명이 82개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약 5,050만명이 인구 2,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의 소도시에 살고 있다. 640만명은 인구 2,000명 미만의 지역에 살고 있다. 통독 이후 베를린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현재 430만명 이상이 수도인 베를린에 살고 있다. 독일 전체의 인구 밀도는 230명/km<sup>2</sup>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구동독 지역과 동베를린의 인구밀

도는 140명/km<sup>2</sup>인데 반해, 구서독 지역은 267명/km<sup>2</sup>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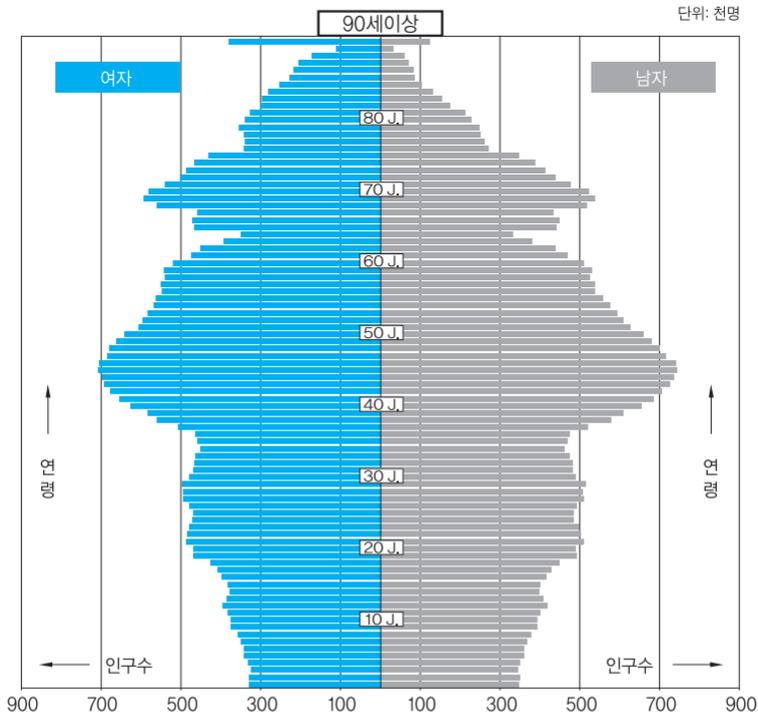
독일 전체인구의 성별 분포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독일의 성별 인구 현황(2006~2009)

단위: 천명

년대	2006	2007	2008	2009
전체	82,314.9	82,217.8	82,002.4	81,802.3
남자	40,301.2	40,274.3	40,184.4	40,103.6
여자	42,013.7	41,943.5	41,818.1	41,698.7

주: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http://www.destatis.de>(독일연방통계청)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10) ·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

[그림 1] 독일의 성별 연령구조

---

독일 인구의 연령구조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상기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0~55세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발전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출산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65세 전후반 인구가 가장 적은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영향으로 이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40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출산율이 약 1.4명으로 낮아진 이후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2008년 말 현재 남자가 약 126,000명, 여자가 약 380,000명이 90세 이상으로 나타난다. 향후 이 같은 인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개선, 실버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6세 이하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독일에서 6세 이하 유아의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언어인 독일어는 게르만어에 속하며, 현재 독일과 국경을 접하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일부 지방, 남부 티롤, 쉐레스비히 북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일부 지역에서 모국어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구소련 지방에 사는 독일 소수민족 역시 독일어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중세 초기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지만,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널리 보급되면서 점차 하나의 문어체로 통일되었다.

〈표 2〉 독일의 성별 인구 증가 추이(1995~2008)

	3세미만			3~6세미만		
	남	여	계	남	여	계
1995	1,206,159	1,143,247	2,349,406	1,351,712	1,284,034	2,635,746
1996	1,204,829	1,141,299	2,346,128	1,286,573	1,222,076	2,508,649
1997	1,222,098	1,158,657	2,380,755	1,244,926	1,181,282	2,426,208
1998	1,228,880	1,164,957	2,393,837	1,213,187	1,150,219	2,363,406
1999	1,219,090	1,155,463	2,374,553	1,209,647	1,146,218	2,355,865
2000	1,195,349	1,133,911	2,329,260	1,225,653	1,162,671	2,388,324
2001	1,173,042	1,110,778	2,283,820	1,237,539	1,173,820	2,411,359
2002	1,146,586	1,085,983	2,232,569	1,227,308	1,163,644	2,390,952
2003	1,113,328	1,057,201	2,170,529	1,204,138	1,144,624	2,348,762
2004	1,097,267	1,041,897	2,139,164	1,177,165	1,118,811	2,295,976
2005	1,079,389	1,025,205	2,104,594	1,148,513	1,093,038	2,241,551
2005	1,062,228	1,007,760	2,069,988	1,115,817	1,059,358	2,175,175
2007	1,052,938	997,880	2,050,818	1,098,545	1,042,955	2,141,500
2008	1,05,1372	996,978	2,048,350	1,079,982	1,025,801	2,105,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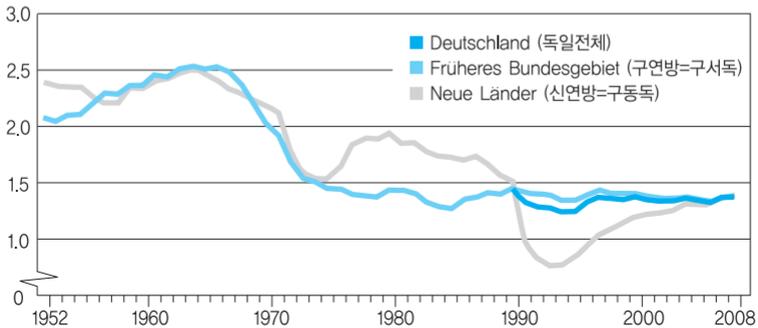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2010)

### 3. 출산율과 기대여명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산율은 9명 미만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성들의 초산 연령도 매우 높아져서 대부분 30대 초반에 첫아이를 낳으며,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는 1.3명에 불과하다. 독일은 1975년부터 평균적으로 여성 1인당 자녀 1.3명을 출산하는 등 30년 전부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독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아 출생율은 여성

1인당 1.37명에서 1.3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출산율 증가는 구동독에 속한 주에서 1.40명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2]와 같이 1990년대의 출산율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서독지역은 1.37명으로 1990년대에 비해 변화가 없다.



©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09

자료: <http://www.destatis.de>(독일 연방 통계청)

[그림 2] 독일의 출산율 변화(1952~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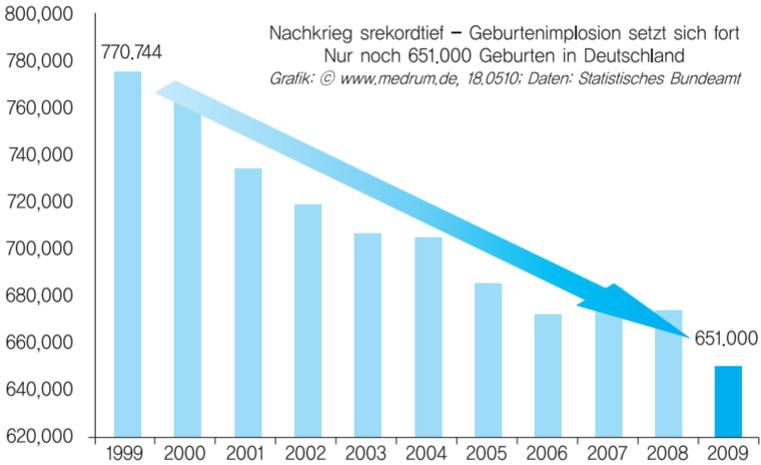
독일의 저출산은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낡은 결과이다. ‘남성1인 부양자모델’이라 불리는 독일의 가족정책은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이후에 직업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빈약하고 그 대신 육아휴가기간이 길고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독일의 정책은 지금까지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유럽 국가들 중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

---

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출산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와 같이 독일은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반하여 여성의 변화된 사회적 역할을 기존의 가족모델에 통합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 지원이라는 가족정책을 펴왔으나 그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김은영, 2005). 결국 독일 사회에서 직업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여성들의 경험은 직업경력을 위해 출산율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고, 비록 때늦은 감이 있으나 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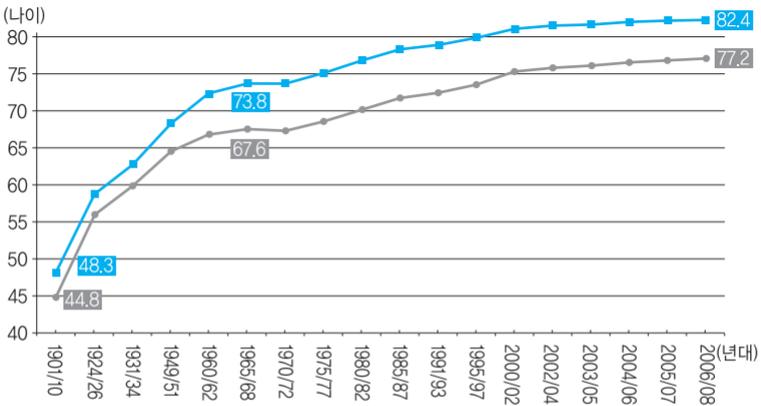
이처럼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50년 후에는 인구가 1천 7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독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65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64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10년 전인 1999년의 신생아수 770,744명 보다 119,744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독일도 조만간 인구 부족과 재정 규모 감소라는 인구학적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유아원과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자료: <http://www.destatis.de>(독일 연방 통계청)

[그림 3] 독일의 출산율 변화추이(1999~2009)

아울러 신생아의 시기별 기대여명은 [그림 4]와 같다.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05, Wiesbaden 2003 und Sterbetafel, versch, Jahrgänge

[그림 4] 신생아의 시기별 기대여명(1901/1910~2006/2008)

---

신생아의 기대여명은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1901년~1910년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44.8세, 여자는 48.3세였으나, 1965~1968년의 경우 남자는 67.6세, 여자는 73.8세로 이 당시 영유아 사망율이 현격히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2006~2008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기대 여명은 남자는 77.2세, 여자는 82.4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5.2세 높게 나타난다.

##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1세기 초 독일 사회를 표방한 단어는 개방성, 현대성, 포용성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가족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지만, 공동생활의 형태는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다. 즉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부단한 대책에 힘입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이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점점 더 많은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공동분담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독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여 3,870만 명의 취업인구 중 1,800만 명(46.4%)이 여성이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을 위해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제도, 아동수당, 전일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탁아소 지원 등 일련의 국가적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양육과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 독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 1.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배경 및 연혁

**독**일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주정부의 두 가지 기반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다. 중세 초기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여는 점차 쇠퇴하고 그 역할을 제정치 세력이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1523년 독일의 모든 도시의 시장과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 유아를 위한 학교를 세울 것과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의무를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근거는 19세기 초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뿌리 깊은 기독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하여 농업이나 목축업, 수공업을 생활수단으로 하여 농촌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발달과 더불어 큰 도시를

---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여 생계가 위협받게 되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여 단순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Bundesanstalt, 1989).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4-16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가난과 비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심지어 5세 전후의 유아까지도)들도 크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이처럼 산업발달에 따른 생존 문제가 야기되어 가정이나 길거리에 부모나 어른의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유아들이 많아지자 아동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Nietsche, 1985).

또한 18세기 독일의 산업화과정에서 여성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육을 위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영유아보육원(Kleinkinderbewahranstalten)’이라는 시설이 설립되었다. 이 시설은 가정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독교적 박애정신과 사회정책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여러 교회와 자발적으로 생성된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1825년부터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보호학교(Bewahrschule), 대기학교(Warteschule), 유아학교(Kleinkinderschule), 유아작업학교(Kleinkinder-Beschäftigungs-schule), 여름학교(Sommerschule) 등의 이름으로 1825년부터 1848년까지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유아보호시설이 세워지게 되었다(Derschau, 1979). 이런 무질서한 상황에서 유아보호시설이 성립되었으므로 교육보다는 유아들을 단지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중

---

사자들은 단기간 과정을 통하여 위생, 놀이, 노래 등을 교육받은 경우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유아교육에 문외한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유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들의 직업적인 명칭도 대기 여자(Wartefrauen), 아동 여자(Kinderfrauen), 보호 여자(Bewahrerin) 등 비교육적인 이름들로 불려졌다. 독일 최초의 유아교사양성 교육 기관은 개신교 목사였던 플리드너(Fliedner 1800-1864)가 1836년 카이저베르쓰(Kaiserwerth)에 세운 유아학교(Kleinkinderschule)가 그 근원으로 처음에는 1-2개월 과정으로 출발하였고, 1848년부터는 4개월 과정, 1850년부터는 6개월 과정, 1854년에는 1년 정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

플리드너(Fliedner)는 유아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보육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적, 종교적 신념으로 유아학교의 커리큘럼도 기도와 찬송, 성경이야기 등의 기독교적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프뢰벨(Fröbel)(1782-1852)과 친분이 두터웠던 펠싱(Fölsing)(1816-1882년)은 플리드너의 지나치게 종교적인 유아교육을 비판하고 어린이는 들의 백합화처럼 자유롭고 신선하게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진정한 친구이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교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교사양성소를 통하여 1880년까지 유아교사를 양성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자를 위하여 최초의 재교육을 실시하였다(Barow-Bernstorff, 1969). 프뢰벨은 1839년에 튀링엔(Thüringen)지방의 블랑켄부르크(Blankenburg)에 ‘놀이 및 작업소’(Spiel und Beschäftigungsanstalt)를 세웠으며, 그 다음 해인 1840년에

---

이 장소를 ‘Kindergarten’ (아이들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중산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힘썼으니 이것이 세계 최초로 Kindergart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첫 번째 유치원이다. 또한 Fröbel은 1839년 유아교사양성을 위하여 6개월 과정의 유아교사 양성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했는데, 특이한 점은 당시 단지 3명의 남자 유아교육자만을 양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840년부터 1844년까지 블랑켄부르크(Blankenburg)와 카일하우(Keilhau)에 있었던 교사양성과 그 이후 여러 도시에서 수시로 교사양성이 있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하였다(Hoffmann, 1951).

유아원과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서독과 동독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교육제도와 이념을 가지고 발전되어갔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독은 옛 바이마르(Weimar)공화국의 교육 방식으로 환원하여 프뢰벨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발전되어갔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교회와 각종 사회복지단체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이와 반면에 동독에서는 국가교육제도에 유치원교육을 포함시켜 국가주도로 이끌어 나갔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주체도 대부분 국가이거나 또는 국가가 경영하는 공장이나 기업체였다(Grossmann, 1987).

정치적으로 흡수통일을 성취한 1990년 10월 3일 이후부터 구동독에서는 구서독의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 근거하여 유아원과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KJHG에 의하면 유아원과 유치원은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관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동독 지역에서는 새로운 시행 시점에 맞추어 집행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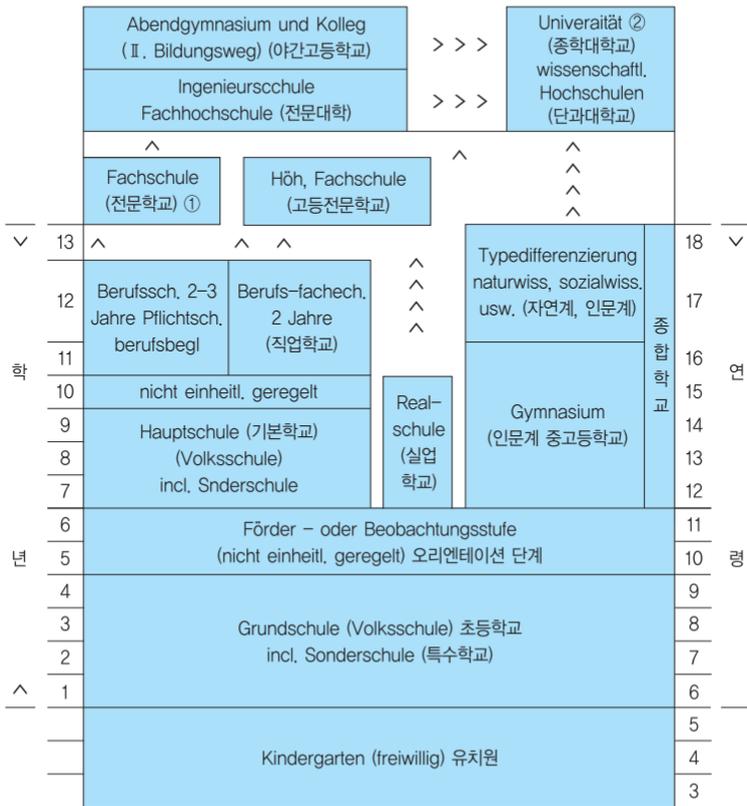
행· 재정적인 준비가 미비된 상태에 있어 1991년 6월 30일 까지를 과도기로 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동독지역의 유아교육기관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도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과도기 내에 구동독의 각 주정부는 각 주의 청소년청(Landesjugendamt)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Jugendamt)을 설립하여 과도기가 지난 후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의거하여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할 준비를 하도록 시달하였다. 이는 기존에 국가가 유아교육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립과 각종 행정·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2. 독일의 교육제도

“모든 사람은 출신성분,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자기소질에 알맞은 교육과 연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Baden-Württemberg 州 헌법 11조)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독일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육비용은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부담케 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도 교육기회 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학전교육을 제외하고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사회가 다양한 직업들의 연관관계에 의해 움직이므로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독일의 교육

제도가 출발하고 있으며, 사회전체는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당연시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은 크게 각 직업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지식을 습득케 하는 직업교육과 이 직업교육을 받기위한 준비교육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그림 5]와 같다.



- ① 유아교사(교육자) 양성 3년(실습기간 1년 포함)
- ② 초등학교 교사 양성 5년 6개월 (실습기간 2년 포함)

자료 : Lexikon der Pädagogik Bd. 3 Verlag Herder, Freiburg 1974, 48

[그림 5] 독일의 교육제도

### 3. 교육자(Erzieher/Erzieherin) 양성과정

**독**일의 교육자라는 용어에는 유아원교사(Kinderkrippeerzieherin), 유치원교사(Kindergärtlerin), 호르트교사(Hortnerin), 수용시설교사(Heimerzieherin), 어린이마을(Kinderdorf)교사 등 여러 종류의 사회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들어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교사에게는 Lehrer/Lehrerin이라는 명칭이 주어진다.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종사할 교육자(Erzieher)의 교사양성은 각 주의 교육부관할로 되어 있으며, 그 형태와 커리큘럼도 다양하다. 즉 브레멘(Bremen)시에서는 대학교에서 교육자 양성을 하고 있고, 네 곳의 주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자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Fachschule)수준에서 양성되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들에 비해 유아 교사양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제 독일은 OECD국가들과 상응하는 유아 및 보육을 위해 대학교에서의 교사양성과정과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실천방안으로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우선 원장 양성교육부터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점차 교사양성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쾰른(Köln)시에서는 2004년부터 대학교에서 교육자(Erzieher)양성을 시작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대학에서 유아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종사할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중인데,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모든 유아교사는 앞으로 대

---

학에서 양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윤선영, 2009).

### 가. 교육자 양성의 목적 및 입학조건

교육자 양성의 주목적은 유아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의 여러 시설에서 교육자로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으며, 학문적인 전문지식과 더불어 결단력, 판단력, 비판력, 창조력, 협동력을 함양하며 무엇보다도 “개성있는 인격의 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자 양성의 입학조건은 각 주정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육자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최소한 실업학교(Realschule)를 졸업한 후 2년간의 직업경험을 요구하며,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전실습을 1~2년간 하여야만 입학이 허락된다. 또한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을 졸업하여 졸업증명서(Abitur)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간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전실습을 필하여야만 입학할 수 있다(Der Hessische Kulturminister, 2000).

### 나. 교과과정

총 3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에서 2년동안 2,240시간의 전공과목과 240시간의 전공선택, 480시간의 학기내 실습(현장견학 포함)을 이수하고, 그 후 1년간 현장실습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2번 학교에 나오며 16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1년간의 현장실습후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비로소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자’(Staatliche

Anerkennung als Erzieher)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즉 1년간의 사전 실습, 2년간의 전문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4년간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자 양성을 위하여 전문학교에 개설된 과목과 강의시간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독일 전문학교(교육자 교사양성) Curriculum 헤센(Hessen)주

전공과목	강의시간			
	총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학	200	120	80	
사회학	80	80	0	
심리학	240	160	80	
법학	160	80	80	
생물학	120	40	80	
교수학	240	160	80	
아동문학과 시청각교육	160	80	80	실습
미술과 공예	160	80	80	
음악 교육	160	80	80	(일주일에 2번
놀이 교육	160	80	80	은 학교에 나오
운동과 체육	160	80	80	며, 160시간의
종교와 종교교육	160	80	80	강의를 들어야
독일어	160	80	80	한다.)
정치학	80	40	40	
현장견학 및 실습	480	200	280	
선택과목(2과목 선택)				
유아교육				
시설기관 교육	240	120	120	
호르트와 청소년교육				
특수교육				

자료 : 이명환(1996), 통독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황과 실제, p.149

---

## 다. 교육자(Erzieher/Erzieherin) 처우

유아원, 유치원, Hort 등에서 종사하는 교육자는 초등학교 교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우선 교육자 양성이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설립주체가 종교단체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했던 수녀와 성직자들이 신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무보수로 봉사한데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봉사와 관계되는 분야는 아직도 여전히 타분야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Herzberg, 1983).

교육자의 봉급은 법률에 규정된 고용인 보수지급령에 의하여 지급되는데, 이는 결혼유무, 자녀수와 관계되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1900~3000유로를 지급받는다. 전문학교에서 2년간 이론교육을 마치고 1년간 현장실습을 하는 기간에는 약 1,200유로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된다. 한편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간의 사전실습기간에는 무보수로 일관되지만, 부모나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연방교육촉진법(BAföG)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장학금은 졸업 후 교육자로 일하면서 재정형편에 따라 무이자로 매월 적은 금액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독일 각 주별 교육자의 월급여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독일 각 주별 교육자의 월급여 현황

Erzieher/in (남교사 / 여교사)			
연방주 Bundesland	응답자수 Eintuäge	평균 Ø€*	최대 Max €*
Hessen	3352	2,291 €	2,520 €
Hessen	3551	2,256 €	3,127 €
Rheinland-Pfalz	1610	2,244 €	2,802 €
Schleswing-Holstein	1683	2,231 €	2,476 €
Hamburg	988	2,220 €	2,223 €
Niedersachsen	3307	2,206 €	2,667 €
Nordrhein-Westfalen	8605	2,200 €	2,451 €
Saarland	512	2,181 €	2,301 €
Bremen	377	2,180 €	2,297 €
Baden-Württemberg	4058	2,177 €	2,579 €
Sachsen	595	2,100 €	2,622 €
Berlin	3600	2,080 €	3,078 €
Brandenburg	1322	2,034 €	2,272 €
Sachsen-Anhalt	449	2,022 €	2,800 €
Thüringen	793	2,000 €	2,266 €
Mecklenberg-Vorpommern	881	1,936 €	2,4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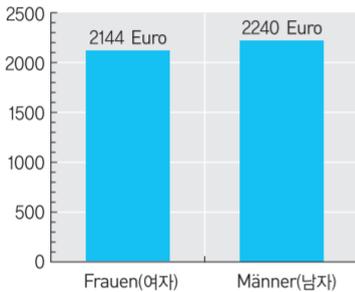
\* Brutto-Gehalt (총급여)

자료: <http://www.meinchef.de>

독일연방 차원에서 교육자의 평균 월급여를 고찰할 때 [그림 6]에서처럼 남자교육자(Erzieher)가 2,240유로, 여자교육자(Erzieherin)가 2,144유로를 수령함으로써 남자교육자의 급여가 여자교육자의 급여보다 4%(96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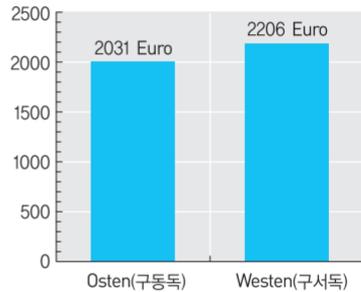
또한 구서독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자(Erzieher/Erzieherin)가 구동독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보다 평균적으로 9%(175유로)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그림 6]에 나타났다.



자료: <http://www.meinchef.de>

[그림 6] 성별 교육자 급여



자료: <http://www.meinchef.de>

[그림 7] 구서독, 구동독 교육자 급여

## 4. 보육교사(Kinderpfleger/Kinderpflegerin) 양성과정

**유**아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고 협력하는 역할로서의 보육교사는 대부분 유아원, 유치원, 보육원, 소아과병동, 청소년 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가. 보육교사 양성의 목적 및 입학조건

보육교사 양성의 주목적은 유아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 있는 유아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있다. 특히 보육교사는 유아교육기관의 전문교사들과 소아과 병원의 간호인력들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일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양성은 교육자 양성과

---

정과는 다르게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양성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안에 16주에 해당되는 현장실습을 마치고, 보육전반에 해당되는 이론 및 실제 그리고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보육교사(Stattlich geprüfter Kinderpfleger)자격증을 받게 된다. 입학에 필요한 조건은 중등학교 단계인 기본학교(Hauptschule)를 수료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그리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한 후 면접이나 때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나. 교과과정

보육교사를 위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영양 및 영양실습, 예술과 공예, 교수방법, 가족과 노동법, 환경교육, 놀이교육, 아동문학, 교육학, 심리학 등이며 교양과목으로는 독일어, 일반사회, 영어, 종교 혹은 철학, 스포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다. 보육교사의 처우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은 사회봉사와 관련이 있는 직업분야일 뿐만 아니라, 양성과정이 직업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급여가 타 직종보다 낮은 편이다. 보육교사의 각 주에 따른 월급여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독일 각 주별 보육교사의 월급여 현황

연방주 Gehaltstabelle Bundesland	최저급여 Brutto (min.)	최대급여 Einkommen (max.)	평균급여 Brutto Lohn(Ø)
Baden-Württemberg	700 €	2,500 €	1,447 €
Bayern	400 €	3,334 €	1,554 €
Berlin	1,800 €	1,800 €	1,800 €
Brandenburg		(자료없음)	
Bremen	405 €	1,650 €	1,103 €
Hamburg	800 €	1,600 €	1,250 €
Hessen	1,400 €	1,750 €	1,660 €
Mecklenburg-Vorpommern	1,200 €	1,300 €	1,259 €
Niedersachsen	300 €	2,000 €	1,350 €
Nordrhein-Westfalen	740 €	3,800 €	1,479 €
Rheinland-Pfalz	900 €	1,800 €	1,445 €
Saarland	1,100 €	1,100 €	1,100 €
Sachsen	880 €	1,200 €	1,040 €
Sachsen-Anhalt	1,150 €	1,250 €	1,200 €
Schleswig-Holstein	7,350 €	2,870 €	1,856 €
Thüringen		(자료없음)	

자료: <http://www.gehaltsvergleich.com>

## 5. 재교육(Fortbildung)

**재**교육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책임지는 조직체, 교회, 기타 복지기관 또는 지역 정부에서 제공하며, 교육자들은 1년에 보통 8일 정도 연수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 동독 출신의 유치원 교사에게는 원래의 재교육 이외에 새로운 교육이념과 커리큘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동독의 유아교사들은 통일 전 구서독의 유아교사들 보다 교사 중심 Program으로 유아들을 보육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아동중심 Program의 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구 동독지역의 유아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재교육 Program은 유아교육 Curriculum, 예술교육, 행동장애교육, 음악교육 등이다. 구동독의 유아교사들은 이미 구서독에서는 일반화된 다양한 교육개념에서 나온 여러 가지 Program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원할 뿐 아니라, 본인이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제로 특정된 Program을 시행하기 위하여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있다. 특별히 혼합연령 그룹의 교육, 교통교육에 관한 주제들에 많은 구동독 유아교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이제껏 구동독의 유아교육기관은 동일연령으로 학급구성이 되어있었으며, 도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나 통일 후 새로운 교육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혼합연령그룹의 형태로 학급구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과 자동차의 수요증가로 인해 날이 갈수록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구서독의 유아교사들은 재교육에서 동작교육, 행동장애아교육, 부모교육, 예술교육 Program에 많이 참여하였다.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재교육 주제는 행동장애아교육과 예술교육이었다. 그 원인은 독일 전체적으로 행동장애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이 창조적이고 인지적인 영역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과 명상에 대한 재교육 Program에는 구서독 유아교사들만이 관심을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유아교육기관 설

---

립주체인 교회가 이런 주제의 개설과 유아교사들의 재교육 참석을 바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구서독 지역에서는 유아들의 내면적인 평온과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유아들에게 적합한 명상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 명상교육은 교사 재교육을 통하여 구동독지역에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Klein und Gros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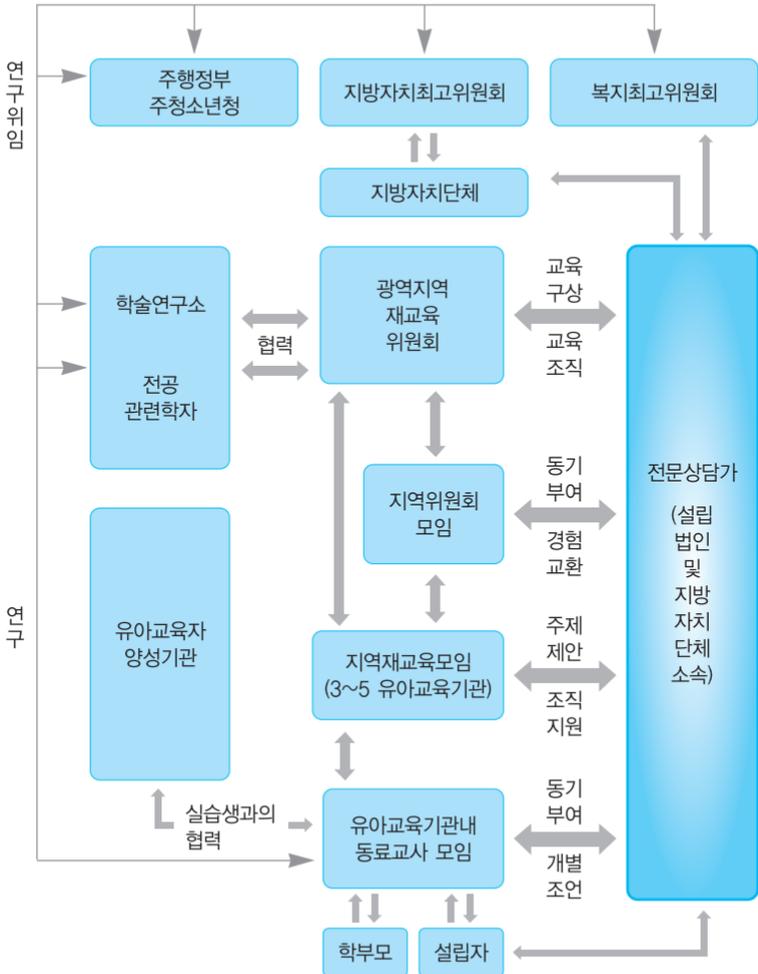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재교육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동료교사 모임에서의 대화와 토론인데,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원내 자율장학의 성격을 띄며, 이를 통해 원내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열린 자세에서 내어 놓고 해결하는 기회가 되며, 각 교사가 다른 교사를 상호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작은 규모의 지역 내 재교육 모임으로 교사들이 다른 교육기관들의 교사들과 만나 교육경험에 대하여 상호교환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 재교육형태로써 3~5곳 정도의 유아교육기관이 참석하게 된다. 이때 설립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전문상담가가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나 보육주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재교육에 참석한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역지구차원의 재교육을 들 수 있다. 전국규모로 개최되는 이러한 재교육모임에서는 국제적인 학술대회, 재교육 주제에 따른 강좌 및 강습,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교사들을 맞이하게 된다.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의 재교육체계는 [그림 8]과 같다.



자료 : Mörsberger(2000), Der Kindergarten

[그림 8]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재교육체계

---

## 6. 보육·유아교육 정책 현황

### 가. 보육관련 법규

통독이 된 1990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wohlfahrtsgesetz)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서독에서는「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이 보육의 법적기초가 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에 발표된「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1~3세까지의 유아원, 3~6세까지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내보육도 장려하고 있다(제22~24조). 「아동청소년복지법」은「청소년복지법」과는 달리 보육시설의 교육적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부모의 자발적인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제25조).

### 나. 보육서비스 현황

독일의 보육서비스 현황은 교육 이념과 실제 측면에서 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즉 1~3세 미만은 유아원(Kinderkrippe)에서, 3~6세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며, 일반 초등학교는 1~4학년, 그리고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1~5학년 아동들을 학교가 끝난 후에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Hort 혹은 Schulhort)에서 돌보아 주고 있다.

독일은 보육시설 이용률에서 통일 전과 후에 차이를 보이며, 이념 및 사회정책, 그리고 유아교육관에서 구동독과 구서독은 많은 차이

를 보인다. <표 6>에 의하면, 통독 당시 서독에 비해 동독에서 보육시설의 이용 및 보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통독 당시 육아지원기관별 이용률(1991)

구분	유아원(1~3세)	유치원(3~6세)	방과후 보육(7~12세)
구동독	57.1	91.9	82.4
구서독	3.7	67.9	4.0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1993)

1991년 구동독에서는 1~3세 연령집단의 57.1%가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서독은 3.7%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경우 구동독은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구서독은 대부분 반일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의 취원율은 유아원보다 훨씬 높아져서 구동독의 경우는 이 연령 집단의 91.9%가, 구서독의 경우는 67.9%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취업모를 위한 방과 후 보육은 구서독의 경우 해당 연령집단의 4% 정도만 이용하는 데 반해 구동독은 82.4%가 이용하고 있었다.

구서독에 비하여 구동독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40년 동안이나 보육 문제가 큰 논쟁거리였다. 주된 이유는 구동독에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아래 유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집단교육을 시켜 왔으며, 많은 어머니들이 취업하여 자녀를 일찍부터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을 일상적인 일로 여겨 왔었기 때문이다. 통독이 되기 직전인 1989년까지 유아원은 80.2%, 유치원은 95.1%, 방과 후 보육은 82.4%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통일이 된 1991년에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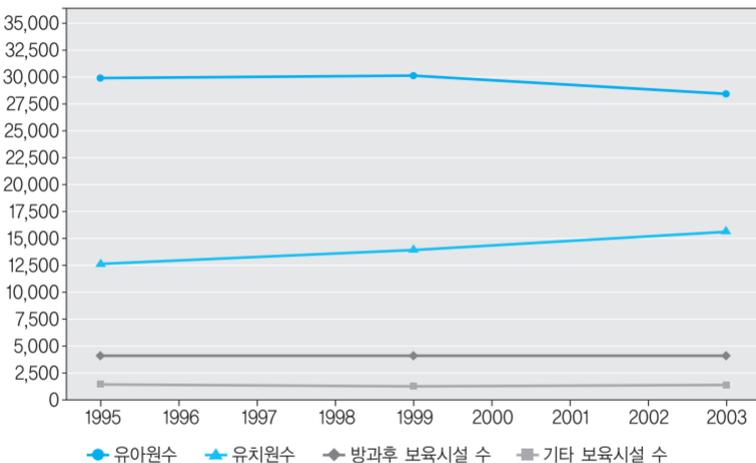
유아원이 57.1%, 유치원이 91.9%로서 보육시설 이용률이 현격히 감소되었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감소한 이유는 첫째, 통독 이후 실업률의 증가, 특히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졌고, 둘째, 지역 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감소되었고, 셋째, 직장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감소되었으며, 넷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독 후 육아지원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7>, <그림 9>와 같다.

<표 7> 독일의 육아지원기관 및 아동 수 현황(1994~2002)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보육시설	기타시설	총계
1994. 12	기관수	856	29757	3657		46623
	아동수	190914	2550399	401184	12353	3142497
1998. 12.	기관수	693	30117	3762	13631	48203
	아동수	166927	2486780	450734		3104441
2002. 12	기관수	799	28406	3494	15318	48017
	아동수	150753	2471688	430280		3052721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2010)



[그림 9] 독일의 육아지원기관 수(1995~2003)

〈표 7〉, [그림 9]에서 보듯이 독일의 육아지원기관 현황은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유아원이 799, 유치원이 28,406, 방과후 보육시설이 3,494로써 총 48,017개의 보육기관이 있었으며, 각 보육기관에 취원된 유아 및 아동의 수는 유아원에 150,753명, 유치원에 2,471,688명, 그리고 방과후 보육기관인 호르트에 430,280명의 초등학교 아동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현재 13개 연방주 및 3개의 자치시(Berlin, Bremen, Hamburg)의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율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독일의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율(2010)

Land (연방주)	insgesamt (전체유아)	Kinder unter 3 Jahren (3세이하)			Kinder von 3 bis unter 6 Jahren (3세-6세)		
		Anzahl (취원아)	Betreuungsquote (취원율)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 in Prozentpunkten (증가율)	Anzahl (취원아)	Betreuungsquote (취원율)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 in Prozentpunkten (증가율)
Baden- Württemberg	324,922	50,957	18,4	2,5	273,965	95,7	-0,1
Bayern	355,559	59,623	18,6	2,9	295,936	90,3	0,7
Berlin	120,336	39,953	42,1	0,6	80,383	93,9	-0,3
Brandenburg	83,822	29,286	51,0	2,7	54,536	95,4	0,3
Bremen	16,603	2,652	16,2	2,5	13,951	88,6	0,6
Hamburg	52,628	14,133	28,7	3,0	38,495	83,6	1,7
Hessen	177,645	30,224	19,4	3,1	147,421	93,0	0,4
Mecklenburg- Vorpommern	55,513	19,745	50,8	1,2	35,768	95,2	0,1
Niedersachsen	216,344	30,824	15,9	3,9	185,520	90,3	1,5
Nordrhein- Westfalen	488,895	62,699	14,0	2,4	426,196	92,3	0,9
Rheinland- Pfalz	116,190	19,534	20,3	2,7	96,656	97,2	0,5
Saarland	24,887	3,794	17,8	2,6	21,093	94,4	0,0
Sachsen	136,975	43,836	42,8	2,7	93,139	95,3	0,3

Land (연방주)	insgesamt (전체유아)	Kinder unter 3 Jahren (3세이하)			Kinder von 3 bis unter 6 Jahren (3세-6세)		
		Anzahl (취원아)	Betreuungsquote (취원율)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 in Prozentpunkten (증가율)	Anzahl (취원아)	Betreuungsquote (취원율)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 in Prozentpunkten (증가율)
Sachsen- Anhalt	76,854	29,178	56,0	0,8	47,676	94,4	0,0
Thüringen	71,094	23,177	45,1	2,3	47,917	96,0	0,0
Deutschland (독일전체)	2,394,325	472,157	23,1	2,7	1,922,168	92,6	0,6
Früheres Bundesgebiet ohne Berlin (구연방)	1,849,731	286,982	17,4	2,9	1,562,749	92,1	0,7
Neue Länder ohne Berlin (신연방)	424,258	145,222	48,1	2,1	2,790,36	95,3	0,2

자료: <http://www.destatis.de>(독일 연방 통계청)

위의 <표 8>에서 나타나듯이 독일 전체 보육시설 취원율은 유아원(1~3세)은 23.1%로 낮은 편이고, 유치원(3~6세)은 92.6%로 높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 주 중에서 베를린(Berli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lz), 짜를란트(Saarland), 헤센(Hessen) 그리고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서는 2007년 8월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기 한 해 전의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Pressemitteilung, 2010).

한편 독일 전체의 3세 이하 전일제 보육은 구동독에 속한 신연방주에서는 25%에 해당하는 유아가 혜택을 받는 반면, 구서독에 속한 구연방주에서는 단지 2.6%에 해당하는 유아들만이 전일제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전일제 보육기관의 취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구

---

연방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으로써 1.4%이며 가장 높은 곳은 신연방의 튀링엔(Thüringen)주로서 31.1%이다.

또한 3~6세 유아를 위한 전일제 보육기관 이용율은 독일 전체 유아 대비 22.1%(495,000명)에 불과하다. 이 곳에서도 역시 신연방(구동독) 지역이 57.7%로 높고, 구연방(구서독)은 15.2%로 낮게 나타났다. 전일제 보육기관의 취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구동독에 속한 튀링엔(Thüringen)주로 84%이고, 가장 낮은 곳은 구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6.9%이다(Pressmitteilung, 2007).

그리고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남자는 2007년 기준으로 11,111명인데, 이 중에서 10,373명은 보육기관에서 직접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738명은 남성보모로서 일하고 있다. 이는 전체교사 대비 보육기관 종사자의 3%를 차지하며, 남성보모는 전체 보모의 2.2%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구동독(신연방주)의 유아보육기관에서 종사하는 남성은 구서독(3.2%)에 비해 적은 약 1.5%이다. 특히 구서독 지역의 브레멘(Bremen)시는 9%, 함부르크(Hamburg) 시는 7.9%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보육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ahl der Woche, 2008).

#### 다. 행정 체계

독일은 전형적인 복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교제도는 일반 학교 교육, 직업학교 교육, 고등교육의 3가지 기본체제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과정은 대체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 1단계, 중등 2단계, 그리고 대학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독일 행정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국방부, 내무부, 정의부, 재무부, 경제부, 음식, 농업 및 산림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국내관계부, 환경계획 건축 및 도시계획부, 청소년, 가족, 여성과 보건부, 교육과학부, 경제협력부, 연구와 공학부, 환경과 자연보호부 등 18개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방과 후 보육(Schulhort)과 1~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청소년, 가족, 여성과 보건부' (Bundesminister fue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청소년 정책, 민간 봉사, 가족정책, 여성정책, 보건정책, 보건사회정책, 노인정책을 통괄하여 관할한다. 이들 중 방과 후 보육시설과 유아원 등의 보육관련 영역은 보건사회정책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인 유치원은 교육과학부 (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Wissenschaft)에서 관할한다. 교육과학부는 ① 가족, 개인, 보충 교육, 청소년과 가정의 협동, 법과 정보 처리,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 ② 교육정책의 일반 문제, 교육 계획의 법적 문제, 교육 발달, 유치원과 학교 영역, 재교육 ③ 직업교육에 대한 법, 조직, 촉진, 직업 교육의 발달 ④ 대학제도에 대한 법, 환경 계획, 대학 확장, 대학 건물, 과학 정책, 과학 학문의 장려 등 네 가지 하위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교육과학부의 네 개의 하위 부서 중에서 두 번째 부서가 유치원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곳에서는 정책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실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행·재정 업무는 각 주의 청소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과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

## 라.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규정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규정에 대하여서는 독일의 연방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이어른(Bayern)주의 아동보육법(Das Bayerische Kinderbildungs-und-betreuungsgesetz, BayKiBig)에 근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아동보육법은 유아원(Kinderkrippe), 유치원(Kindergarten), 방과후 보육시설(Hort)등에서 보육 및 교육을 받는 영유아와 아동들의 권리, 그리고 교육기관에 자녀를 취원시키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더 나아가 설립주체와 종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아동보육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일수 및 교육내용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1/3 정도는 장애아와의 통합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고, 적어도 한 기관에 3명 이상의 장애아가 취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보육법 제2조).

### 2) 설립주체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될 수 있으며, 학부모단체도 법인등록을 통하여 설립주체가 될 수 있다(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단위인 읍·면의 교육담당자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시설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필요시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제5조).

---

유아교육기관의 신축·개축, 확장의 비용은 설립자가 최소한 1/3은 부담하여야 하며, 나머지 2/3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 3)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

유아의 도야·교육·보육에 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학부모에게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단지 학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교육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따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의 교육적 의견과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한다(제4조).

학부모와 교사는 파트너로서 유아의 인격도야와 교육·보육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학습과 성장과정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설립자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학부모위원회’(Elternbeirat)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4조). 학부모위원회는 연간교육계획, 교사인력의 규모, 학부모를 위한 교육계획, 유아교육기관의 등원 및 하원시간, 그리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언한다.

### 4) 초등학교와의 연계와 재교육

유아교육기관의 만3세 유아를 위해 초등학교의 입학시까지 원만한 연계교육이 되고자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교육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초등학교의 교사는 정기적으로 교육정보와 교육컨셉을 상호협력하여 공유하여야 한다(제15조). 교육자의 질

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합한 재교육이 실행되도록 설립주체는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의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과 함께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제17조).

〈표 9〉 독일 육아지원기관의 유형

유형	취학 연령	설립 주체	운영 형태	
유아원	0-3세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 - 가정이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전통이므로 통독 이후에도 취원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유치원	유치원	3-6세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으로 놀이중심 활동으로 운영함
	학교유치원	5세 이상	초등학교 체제에 속함	-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적응이 어려운 경우 학교 유치원을 다닌 후 재입학 가능함 - 초등학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이 미리 등록함 - 놀이보다는 학습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역점을 둠
	시작학급	5-6세	초등학교 체제에 속함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 - 놀이보다는 교과중심 학습 형태로 운영함
호르트	방과후보육 시설: 6-14세 유치원혼합 연령: 3-14세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 시간제한이 없고, 오후 5시까지 보호함 - 학교 수업이 없거나, 오전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 도 시설 이용이 가능함 - 방학 기간에도 계속 개방함	

자료: Grossmann(1992), Kindergarten und Pädagogik, Beltz, Weinheim/ Basel.

## 마. 육아지원기관의 유형 및 교육적 특징

### 1) 육아지원기관의 유형

통일된 독일의 육아지원기관으로는 0~3세 유아를 위한 유아원

---

(Kinderkrippe)과 3~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유치원(Schulkindergarten)과 시작학급(Eingangsstufe), 그리고 6~12세 아동을 위한 방과후 기관으로 호르트(Hort, Schulhort) 등이 있다(Grossmann, 1992).

### ①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유아원(Kinderkrippe)

3세 미만까지의 영아를 돌보는 유아원(Kinderkrippe)은 대부분 취업모나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를 아침부터 직장일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준다. 현재까지는 교육적 차원보다는 보호와 위생 차원에서 보육되었으나 점차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구서독에서는 1990년에 ‘8차 청소년 보고(Jugendbericht)’를 위한 전문가 보고서에서 유아원이 교육적이고 사회·정치적 중요성 측면에서 양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가족구조와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아동 발달에 있어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구서독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육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을 확대할 의도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 입소요건이 까다로와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거나 부모가 모두 학업 중이거나, 한부모 가족 자녀들만 보육시설의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만이 원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인 경우도 때때로 보육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

기관에서 자녀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의 주된 이유는 가끔씩 어머니 자신만의 자유 시간을 원하며, 자녀에게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1주일에 1~2번 정도 정규적으로 유아원에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서독과는 대조적으로 구동독에서는 유아원이 보육의 기본 형태로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하루 종일 근무를 하거나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 주는 곳으로서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다. 구동독의 유아원에는 몇 개월 안 된 영아부터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요즈음은 대부분의 영아들이 2세가 되면서 취원하고 있다. 유아원에서 영아(infants)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통 5개월 무렵부터 유아원 입소가 허락되고 있다.

전체보육시설의 2/3는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뮌헨(München), 슈튜트가르트(Stuttgart) 같은 큰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구서독에서는 1% 가량만이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구서독은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사람에게 영유아를 맡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러한 가정내보육의 잇점은 아동들이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국가재정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육사와 부모간의 개별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동독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나,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2% 이하가 보육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 구동독에서 보육모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되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부모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이 경우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통 몇 달 동안만 유아를 맡기게 된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3월 현재 독일 전체적으로 417,000명의 3세 이하 유아들이 유아원과 공적 지원을 받는 보육사에 의하여 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해에 비해 53,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일 연방 차원에서 볼 때 해당 연령 유아의 20%(2008년:18%)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는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유아원의 취원율을 2013년까지 35%로 상향시키기로 결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Pressemitteilung, 2009).

독일연방을 구서독과 구동독 지역 차원에서 분류하여 3세이하 유아의 유아원 취원율을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즉 구서독은 약 15%,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9. September 20

[그림 10] 3세 이하 보육

---

구동독은 45%의 해당 연령 유아들이 유아원이나 교육받은 공적 지원을 받는 보육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3~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유치원(Kindergarten)

독일은 1996년 이후「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만3세 이상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Kindergarten이라는 용어대신 Kindertagesstätten(Kita)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자가 반일제 유치원의 성격이 강한데 비하여 후자(Kita)는 종일제 유치원 및 종일제 보육기관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 ③ 학교유치원(Schulkindergarten)

독만 6세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습능력이 부족할 경우 의사 및 담임교사의 결정에 따라 초등학교 내에 있는 학교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다. 학교유치원에 취원한 후 1년 뒤 학습능력이 개선되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재입학할 수 있다. 학교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1-2년이며, 교육시간은 오전반 3시간, 오후반 3시간 두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교육체제에 속해있는 독일의 학교유치원은 우리나라의 병설유치원과 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유치원의 학습방법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도록 놀이중심이 아닌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학습준비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몬테소리 교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초등

---

학교 학급당 인원은 평균 20명이나, 학교유치원은 한 학급이 대개 10명 내외이다.

#### ④ 시작학급(Eingangsstufe)

헤센(Hessen)주에서 1970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위해 시도한 시범모델이다. 시작학급의 입학자격은 만5세인데, 이는 유치원에 취원할 연령의 유아가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작학급의 교육연한은 2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과 연결 지어 하나의 단위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속해 있으나 설립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시작학급 1년은 유치원과 흡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시작학급 2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요구하는 교과중심 학습형태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유치원과 달리 일반적인 어린이들이 입학하게 된다.

#### ⑤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육시설: 방과 후 보육(Hort, Schulhort)

방과 후 보육시설(Hort, Schulhort)은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 장애아를 위한 특수초등학교에서는 1~5학년을 위한 시설이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최근 들어 이용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시설의 입소자격은 주로 양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 중인 부모 또는 한부모 자녀인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방과 후 보육시설의 도움이 없이는 적절한 교육과 복지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

놓인 자녀들이다.

보통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하여 저녁 4시 30분에서 6시까지 운영되는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만나질 방과 후 보육(Halbtagsbetreuung)도 있다.

시설 입소연령은 대개 6~12세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세(초등 4학년 아동)까지 다니고 있다. 아침 일찍 와서 아침식사를 이곳에서 하고 학교로 등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교사들이 점심을 제공한 후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을 제공하며 지정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즐거운 오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방과 후 보육시설(Schulhort) 유형으로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경우, 초등학교 근처에 단독 건물로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유치원이나 종일제 유치원(Kita)에 가족 그룹 형태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경우 등이 있다.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부모의 수입에 따라 약정된 교육비를 지불하며, 교사의 인건비 등 소요경비는 해당 주정부의 청소년국에서 집행한다.

## 2) 육아지원기관의 교육적 특징

독일의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교육적 초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독특한 유아교육기관 형태와 교육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이명환, 2003).

---

### ① 상황중심 유아교육기관(Die Situationsorientierte Vorschuleinrichtungen)

상황중심 교육에서 학습은 유아들의 실제 삶의 상황에서 출발한다. 유아들은 자신의 생활상황과 밀착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중심 유치원의 학습과정은 유아의 삶의 상황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실생활로부터 격리된 내용이나 교과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상황중심 교육의 생활상황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테면 방학, 출생과 죽음, 쓰레기, 잠자리, 부모가 하는 일, 새로운 친구, 텔레비전 등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학습(Soziales Lernen)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상황중심 유아교육은 다양한 출생배경을 가진, 따라서 각기 다른 학습과정을 거친 유아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자율성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능력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율성이란 자기주관, 독립심, 주체성을 의미한다. 자율성교육이란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에서 자기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며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연대의식에 대한 교육이란 우리가 이 지구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함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약한 자와 장애자를 보호하고, 다른 종족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며, 매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며,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화해하기를 힘쓰며, 평화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탐욕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 이 연대의식은 인간에게만 해당

---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파괴당하고 황폐화되어 가는 우리들 지구의 자연과 그 속의 생물과 자연자원을 세심히 보살피고 보호해 나가겠다는 책임의식 있는 교육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능력이란 교육, 교양, 지식,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며 합리적인 대처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Heller, 2000).

상황중심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활 상황이 선정된 후 먼저 이러한 상황의 문제가 무엇이며, 아동과 부모에게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가의 목표를 세운 후 어떤 교육활동 및 공간구성을 할 것인지, 지역 간 협조를 통해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 ② 열린 유아교육기관(Die offene Vorschuleinrichtungen)

열린 교육의 교육철학적 근거는 유아는 자신의 발달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교육관에 기초한다. 천성적으로 인간은 악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열린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들을 신뢰해 주는 일이며, 개성이 잘 발달 되도록 격려해 주고 유아가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열린 교육을 유치원에서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90년대 초반 교사회의와 부모회의에서 고정학급 형태로는 유아·교사·부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데

---

기인한다. 또한 유아의 처한 삶의 상황을 중시하며, 그곳에서 교육이 출발하는 상황중심교육의 교육적 초안과 마침 시기적으로 적절히 연계되어 이 분야의 열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시범 유치원을 선정하여 열린 학급형태의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유치원의 고정학급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정된 교실공간에서 20-22명의 유아들이 활동하므로 자연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을 전체 유아가 동시에 실행하게 되므로 장소 협소로 인하여 집중력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고, 더군다나 그 활동을 원치 않는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허다했다. 셋째, 모든 유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일과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교사들은 고정학급의 소그룹활동에 있어서 성실하고도 자유롭게 일할 수 없었다. 넷째, 유아들이 특정한 반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반의 유아들과 사귀고 공동으로 놀이하거나 작업할 기회를 제한 받았다. 다섯째, 고정된 학급형태에서는 유아가 자연스럽게 다른 교사와 신임관계를 맺고 싶어도 여의치 않았으며, 역시 교사도 다른 학급의 유아들을 알고 지낼 수가 없었다. 여섯째, 유아들은 다른 학급의 활동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고정된 학급 형태에서는 이런 욕구를 채울 수 없고, 더 나아가 반끼리 서로 폐쇄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는 점이였다(Deutsches Jugendinstitut, 1994).

열린 교육에서는 동일 시간 내에 동일한 것을 학습하거나 놀이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아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자유롭게 활동 할 때 바람직한 교

---

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③ 통합 유아교육기관(Die integrative Vorschuleinrichtungen)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은 지극히 당연한 교육적 이고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며,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 장애아동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위임받아 교육하였으나, 독일 교육위원회의 권장과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중증장애를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을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기에 독일의 모든 유아교육은 통합교육이고, 모든 학교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통합 보육기관에서는 장애유아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특수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일반교사와 함께 교육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기관들은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시설은 장애아를 장애아로서 머물게 할 뿐이다”라는 모토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다”라는 의식이 독일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국가의 해당부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을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설과 거리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정책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가족그룹(Familiengruppe) 보육기관

가족그룹 형태 보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 목적은 도시의 맞벌이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돕고,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교육시키는 데 있다.

‘가족그룹’ 보육기관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0~3세의 영유아를 위한 유아원(Kinderkrippe)과 3~5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그리고 6~12세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시설인 호르트(Hort)까지를 통합하여 보육과 교육 그리고 방과후 교육의 문체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나의 ‘가족그룹’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6명은 3세 이하이며, 6명은 3~5세 유치원 연령의 원아이고 나머지 4명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다.

즉, 0세의 갓난아기부터 12세의 초등학교 아동까지를 포괄하는 연령을 한 학급(가족그룹)으로 운영하고 있다.

#### ⑤ 몬테소리 유아교육기관(Die Montessori Vorschuleinrichtungen)

몬테소리 교육을 연구하고 그 교육적 이념을 독일교육현장에 정착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 1925년에 ‘독일 몬테소리 협회(DMG, Deutsche Montessori Gesellschaft)’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몬테소리가 1929년에 ‘국제몬테소리 협회(AMI,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e)’를 세운 것 보다 4년이나 앞선 것이다. 독일 몬테소리협회의 활동 중 하나는 ‘Montessori 교사 양성’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과정으로서 매해마다 Frankfurt와 Hamburg

---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몬테소리 교육에 뜻이 있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시에 이들에 걸쳐 몬테소리교육에 대하여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몬테소리교사자격증인 '디플롬' (Diplom)를 수여하고 있다.

몬테소리는 루소의 교육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아동을 선한 속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선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아동 개개인의 선한 천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 주된 교육 목적이며, 정상적인 발달 궤도를 벗어나 일탈된 발달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정상화로 이끌기 위해 준비된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화란 '이상적'인 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성과 이미그의 앞에 전제되어 있는 구체적인 생활 및 교육조건 사이에서의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최적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몬테소리는 바로 그 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개선가능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이러한 교육조건의 개선 작업이라 생각하였다. 몬테소리의 아동에 대한 기본교육관은 망각된 존재로서의 아동 발달 법칙과 욕구를 연구하여 아동 그 자체를 존중하며 나아가 그에 상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몬테소리 유치원은 몬테소리가 강조한 교구들의 준비된 환경 속에서 전문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1,000여개의 몬테소리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 600여 곳이 유치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과 학교가 연계하여 운영되는 곳도 있다.

## ⑥ 발도르프 유치원(Der Waldorfkindergarten)

루돌프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인지학적 교육학과 교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며, 이 인지학적 근본지식은 슈타이너의 광범위한 인문과학적 연구와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교사가 유아를 대할 때 이 지구상에서 단 한번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유아의 잠재성을 깨우고, 유아의 천성을 살펴 정신적 발달의 후원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도르프 교육기관에서는 놀이감으로 가능한 한 완제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완제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상상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대상물체는 지적사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물을 모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놀이감으로 어린이는 무한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최근의 발도르프 유치원의 발달추이를 통계적으로 고찰해보면, 1974년 130개에서 1981년에는 238개로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 10년뒤 1990년에는 338개로 그동안 무려 100개의 유치원이 더 신설되었다(Bundesminister, 1993/1994). 이러한 발도르프 교육기관의 증가세는 1990년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에서도 발도르프 유치원과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2003년 현재 독일 전체 발도르프 유치원은 528개로 집계되고 있다([www.waldorfkindergarten.de](http://www.waldorfkindergarten.de)).

## ⑦ 숲 유치원(Der Waldkindergarten)

독일은 1993년에 덴마크 숲 유치원의 교육이념에 영향을 받아 플렌스부르크(Flensburg)시에 숲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독일 최초의 숲

---

유치원인 플랜스부르크 숲 유치원은 당시 유치원 교사였던 Petra Jäger와 Kerstin Jebesen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spielen und lernen”(놀이와 학습)이라는 유아전문잡지에서 덴마크의 숲 유치원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 기사내용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Friedrich, U, 1991). 숲 유치원 교육 구상이야말로 유아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교육이라는 확신을 갖고 덴마크 숲 유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장 연구를 하였고,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와 주정부의 인가를 1993년에 받아 독일 최초의 숲 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4년에는 뤼벡(Lübeck)시와 베르글렌(Berglen)시에 플랜스부르크(Flensburg) 숲 유치원의 교육이념에 따라 숲 유치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창기의 숲 유치원은 유아의 자연체험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교육현장에 실현시키려는 교사와, 자연친화적인 교육관을 지닌 뜻 있는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푸른 하늘 아래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를 소망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설립되었고 나날이 발전되어 나갔다. 특히 플랜스부르크(Flensburg) 숲 유치원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학문적인 바탕 위에 설립되었기에 현재도 독일 숲 유치원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숲 유치원을 위한 교사교육과 재교육 그리고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Schede, 2000). 이와 같이 1993년에 플랜스부르크 숲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로 숲 유치원은 학부모와 사회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지지에 힘입어 10년 뒤인 2003년에 350개, 그리고 2010년 현재 1000여곳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자연친화적인 유치원의 모델로써 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

기존의 유아교육기관과는 달리 문과 벽이 없이 자유스러운 하늘 아래서 교육이 펼쳐지는 숲 유치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하여, 유아의 신체와 정신을 전인적으로 성장·발달시키며, 유아의 개성적인 발달을 돕는데 있다, 유아는 매일의 숲 유치원 활동을 통하여 유아 자신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연과 공생하여야 함을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유아기에 형성된 자연관은 유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갖게 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인도해 준다. 그리고 숲의 온갖 사물을 이용하여 유아가 놀이 활동을 전개하기에 유아가 상품화된 장난감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며, 숲의 흥미로운 일과활동은 유아의 탐구와 탐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시킨다. 숲은 유아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열린 공간, 고요한 공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기에 숲 유치원의 유아는 일반 유치원의 유아보다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집중력이 숲 유치원을 방문하였던 유아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⑧ 자연·환경 유치원(Der Natur-Umwelt Kindergarten)

유아들에게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유치원 내에서도 자연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함께하는 환경유치원(자연유치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환경교육에 있어서 첫 출발점은 유아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일로서, 유아교육기관이 실내와 실외 환경이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적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연관과 환경관이 유아기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생명체는 비록 그것이 더럽고, 위험하고, 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와 권리가 있기에 존엄한 것이다. 둘째, 자연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땅 흘리며 일하여 수확하거나 손수 만드는 것이 완성된 상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 의의가 있다. 넷째, 자연이 훼손될 경우 다시 만회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섯째, 생명력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유아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Naumann, 1998).

### ⑨ 스포츠·동작 유치원(Der Sport-Bewegungskindergarten)

유아들의 운동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들을 전인적으로 성장·발달시키기 위하여 동작 중심의 스포츠 유치원내지 동작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치원이 1990년대 독일 내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인 스포츠 유치원의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남부 독일의 인구 20만 정도의 푸라이부르크(Freiburg)시와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10개의 스포츠 유치원이 있으며, 이 10개 스포츠 유치원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인근의 스포츠단체나 협회가 130여 곳 있는 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많은 수의 스포츠 유치원이 독일 전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 유치원의 목적은 어릴 적 부터 유아의 신체를 단련하여 장차 운동을 잘하는 선수로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동작활동을 통해서 단지 유아에게 좀 더 많은 움직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아의 동작활동이 촉진되어져 전인적인 유아로 발달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이런 목적으로 스포츠 유치원이 설립되었기에 유아들의 운동성과는 전혀 요구되지 않으며, 3-5세의 혼합연령으로 학급이 구성되어 일반유치원처럼 상황 중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스포츠 유치원’ 보다는 ‘동작유치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⑩ 장난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치원(Der spielzeugfreie Kindergarten)

장난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아교육 프로젝트는 1992년 바이어른 주의 펜즈베르그 시립유치원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장난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치원’ 프로젝트의 근본취지는 중독예방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독(예: 구매충동, TV시청, 컴퓨터 게임 등등)으로부터 유아들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행동표본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계는 ‘소비세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부모와 유아는 그 곳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유행하는 장난감을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구입하게 되며, 디즈니 비디오테이프가 시리즈로 나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기에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세트로 전체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유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주 새로운 장난감을 시준다거나, 단 것을 준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선물을

---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서도 유아를 특정영역에 있어 중독으로 이끄는 현상이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유아들이 슬퍼하거나 지루해 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만족의 간편한 방안으로 유아가 놀이를 속히 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위안물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서 유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소질과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은 장난감의 홍수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질식되고 고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유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장난감이 제거된 상황에서 좌절과 지루함을 견뎌내고, 스스로 생각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였으며, 사물을 다루는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각 유아들은 그들의 발달에 필수적인 자립심과 자의식이 강화되었다.

### ⑪ 해변유치원과 농장유치원(Strand und Farmkindergarten)

독일은 지형 상 남부와 중부지역은 숲 지역이 많이 있지만 북부 지역은 바다를 유일하게 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적 특성을 이용하여 해변유치원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변유치원도 숲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4시간, 겨울에는 3시간에 걸쳐 자유스런 해변가에서 매일 자연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이 행해지며, 3~5세 혼합 연령으로 학급이 구성되었다. 바다에 인접하여 살지 않는 도시의 유아들에게 있어서 해변은 단지 부모와의 휴가기간 동안에 잠시 와서 몇일 머무는 장소로서 그저 햇살은 뜨겁고 모래는 따끈하고 건조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바

---

닷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나날의 삶의 장소로서 해변지역이 갖는 특징과 조건들을 수영하며 살아가기에 교육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농장유치원의 기본적인 교육 구성은 숲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스런 관계를 어린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하며, 유아의 신체와 정신을 전인적으로 성장·발달시키는데 있다. 농장유치원은 1999년 초에 브레멘(Bremen)시에 학부모가 설립주체가 되어 세워졌는데, 유아가 온갖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특히 동물 사육에 중점을 둔 자연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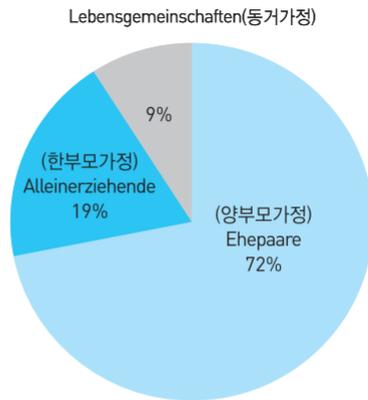
## 독일의 휴가제도 및 현금지원

**독**일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양육 관련 법제는 주로 취업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아실현 또는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육 관련 법제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차세대 경제활동인구의 확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지구촌 각국이 풀어야 할 중대한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각국은 출산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법제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조성혜, 2007). 독일의 경우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2005년 출산율이 1945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게 되자 국가도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OECD는 독

일의 저조한 출산율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5년 독일의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0.5%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 독일의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1939년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은 독일의 인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독일가정은 기본적으로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5년에는 평균 세대구성원이 3명이었으나, 1972년 2.7명, 2000년 2.2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복수 세대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2000년에는 전체 가구의 1/3만이 복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복수 세대라 해도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이며,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은 0.8%에 불과하다. 복수 세대의 3/4은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고, 6%는 한 부모 가정, 1%는 동거가정과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0년에 가족형태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독일의 가족 구성은 양부모 가정이 72%, 한부모 가정 19%,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 가정이 9%이다.



©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0

자료: <http://www.destatis.de>

[그림 11] 독일의 가족구조(2010)

---

특히 독일은 한부모 가정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약 160만에 해당하는 부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다섯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의 아이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 한사람에 의한 양육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대부분 양부모 가족에 비해 열악하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은 자녀 양육에서 국가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에도 문제가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심리치료를 통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1. 휴가 및 휴직제도

### 가. 모성보호(Mutterschutz)

여성이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정신적 고충과 부담이 수반되기에 독일 기본법(GG) 제6조 제4항에서는 모성의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52년에 제정된「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의하면 모든 근로여성과 직업훈련중인 여성이 임신부가 되었을 때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부의 국적 또는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 단기근로자, 공기업 및 훈련 중인 근로자에게도 이법이 적용되나, 자영업자나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은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의 위험

---

한 작업을 금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유급으로 산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모성보호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사실의 고지

근로 중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임신사실을 인자하게 된 즉시 사용자에게 임신사실과 출산예정일을 성실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즉시 관할 영업감독청(Gewerbeaufsichtsamt)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제3자에게는 비밀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모성보호법 제5조).

### 2) 해고의 제한

여성근로자가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2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임신기간 및 출산 후 4개월째까지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 없다(모성보호법 제9조 제1항).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근무년수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사실상 종료되는 전제조건에서만 이 규정이 유효하다.

### 3) 근로금지기간

임산부의 근로금지기간은 산전 6주부터 산후 8주까지는 모성보호

---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산 또는 쌍생아의 경우 산후 12주까지 모성보호기간이 연장된다(모성보호법 제3조 및 제6조). 따라서 모든 산모들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총 14주의 근로 금지기간이 적용된다.

#### 4) 기타 취업금지

##### ① 위험한 작업의 취업금지

임신이후는 신체에 무리가 오는 힘든 노동현장에서 일 할 수 없으며, 유해물질, 광선, 진분, 가스, 수증기, 열, 냉기, 습기, 진동 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모성보호법 제4조).

또한 임산부는 5kg 이상의 물건을 들거나, 혹은 10kg의 물건을 도구의 도움 없이 작업하는 일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노동의 강렬한 정도에 따라 더 나은 급여를 받거나, 작업 속도가 일정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예: 콘베이어벨트).

더 나아가 임신 5개월 이후로는 4시간 이상 계속 서서하는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임신 3개월 이후로는 승강기 내에서의 작업이 금지된다.

##### ② 연장근로 등의 금지

임산부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모성보호법 제8조). 또한 임산부는 오후 2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작업은 물론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산부는 하루에 8시간 30분 이상 일 할 수 없으며, 2주 연속 9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5) 모성수당 및 모성수당지원금(산전후 휴가급여)

임산부는 취업이 금지된 기간(산전 6주, 산후 8주 또는 12주)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모성수당에 의한 일일급여액은 최고 13유로이며, 질병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임산부는 210유로의 모성수당을「제국보험령(Reichsversicherungsordnung)」제20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급받게 된다.

### 나. 부모휴직수당(Elterngeld) 및 부모휴직(Elternzeit)

#### 1) 부모휴직수당

부모휴직수당이란 종전의 출산여성에게만 부여하였던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를 대체한 육아휴직으로 부모 모두에게 자녀양육의 기회를 공동으로 부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2007.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전의 양육수당(Erziehungsgeld)대신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을 지급받게 되었다.

한편 부모휴직제도를 아버지가 청구하는 비율이 2001년에는 1.5%로 매우 낮았으나, 2008년에는 18%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 ① 청구권자

부모휴직수당은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공무원, 학생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된다. 단 청구권자는 독일에 주거지를 두고 상주하는 부 또는 모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로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취업이 안 된 상태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친부

---

확인증을 소지한 사실혼의 부,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자녀의 양부모 및 자녀를 입양한 부모에게도 부모휴직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 ② 지급기간 및 급여액

부모휴직수당은 자녀 출산 이후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 부모 중 한 사람만이 부모휴직수당제도를 청구할 경우 최장 12개월까지이며 만약 14개월 전 기간을 부모휴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휴직수당은 지난 1년간 평균 순임금의 67%로 최고액은 1,800 유로이며, 평균임금이 1,000 유로 미만인 경우 지급률 67%는 2 유로 당 0.1% 포인트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쌍생아는 둘째 아이에 대해 300유로를 추가 지불한다.

부모가 휴직하는 기간에 둘째 자녀가 출생한 경우 부모휴직수당은 10% 증액되며, 첫째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두 번째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부모휴직수당은 첫째가 6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이 규정은 입양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휴직수당은 최근 납부한 세금실적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며, 전업주부, 학생, 실업급여 II의 수급자 내지 무소득자에게 최저 부모휴직수당으로 월 300 유로가 지급된다.

---

## 2) 부모휴직(Elternzeit)

### ① 청구권자 및 신청기간

부모휴직제도는란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자녀 양육을 원만히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무급의 휴가 청구권이다.

부모휴직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부모휴직수당과는 별개로 부여되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모휴직제도는 휴직전체기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기간만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직을 위해서는 휴직 시작 7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에 휴직개시일, 휴직기간, 휴직기간 중이지만 단시간근로를 원할 경우 근무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휴직기간

부모휴직기간은 자녀가 3세가 되는 날까지 부여된다. 여성의 산전 후휴가는 부모휴직에 산입시킨다. 또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매 자녀에 대하여 부모휴직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부모가 2년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부모휴직을 하던 중 이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2년이 되기 전 8주전에 잔여 1년도 계속해서 부모휴직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의 남은 부분을 자녀가 8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이월해 놓지 않으면 3년으로 효력이 종료된다. 또한 휴직기간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기에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융통성 있게 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법정휴가와 부모휴직

양육자인 부모의 법정휴가는 부모휴직 1개월에 대비 1/12만큼 단축되나, 근로자가 휴직기간 동안 단시간에 걸쳐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부모휴직수당법 제17조 제1항). 법정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부모휴직이 끝난 후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 둘째 자녀의 출산이 있는 경우 휴가가 이월되지 않기에 휴직 직후나 그 다음 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 노사관계가 종료된 경우 잔여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여 준다. 근로자가 부모휴직 전에 단축되어야 할 법정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부모휴직이 끝난 후 부여되는 법정휴가를 단축시켜 줄 수 있다.

### ④ 해고의 제한

부모가 휴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휴직 개시 8주 전부터 휴직 전 기간 동안 해고가 제한된다. 단 사업감독청의 허가가 있고, 폐업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해고를 인정한다. 부모휴직기간 만료 시점에 노사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3개월의 해고 예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현금지원 및 조세정책

### 가.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수당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계와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은 지급된 아동수당만 가지고는 자녀의 양육이 힘든 경우에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또한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아동세금공제(Kinderfreibetrag)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고소득자에게 아동수당 대신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95%)의 부모는 아동수당을 신청한다.

#### 1) 청구권자

아동수당은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제1조에 의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납세 의무를 지닌 모든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아동자신이 아동수당을 직접 지급받는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독일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급의 대상이 된다.

#### 2) 지급 대상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아직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에는 25세(2007년 이전에는 27세)에 달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녀의 병역의무기간이나 보충역 근무기간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 중에 있는 경우는 25세가 넘었더라도 병역의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 3) 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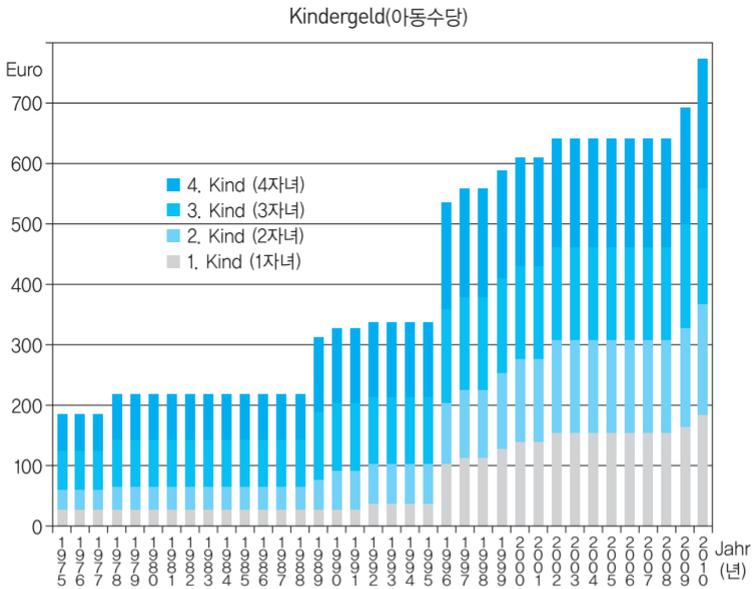
아동수당으로 2010년 1월부터 <표 10>, [그림 12]에 제시되었듯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매달 184유로, 셋째 자녀는 190유로, 넷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매달 215유로가 지급된다.

<표 10> 독일 아동수당의 연도별 발전과정(1975~2010)

년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이상
1975	26 EUR (50 DM)	36 EUR (70 DM)	61 EUR (120 DM)	61 EUR (120 DM)
1976~1977	26 EUR (50 DM)	36 EUR (70 DM)	61 EUR (120 DM)	61 EUR (120 DM)
1978	26 EUR (50 DM)	41 EUR (78 DM)	77 EUR (150 DM)	77 EUR (150 DM)
1989	26 EUR (50 DM)	51 EUR (100 DM)	112 EUR (220 DM)	123 EUR (240 DM)
1990	26 EUR (50 DM)	66 EUR (130 DM)	112 EUR (220 DM)	123 EUR (240 DM)
1991	26 EUR (50 DM)	66 EUR (130 DM)	112 EUR (220 DM)	123 EUR (240 DM)
1992	36 EUR (70 DM)	66 EUR (130 DM)	112 EUR (220 DM)	123 EUR (240 DM)
1993	36 EUR (70 DM)	66 EUR (130 DM)	112 EUR (220 DM)	123 EUR (240 DM)
1994	36 EUR (70 DM)	66 EUR (130 DM)	112 EUR (220 DM)	123 EUR (240 DM)
1995	36 EUR (70 DM)	66 EUR (130 DM)	153 EUR (300 DM)	123 EUR (240 DM)
1996	102 EUR (200 DM)	102 EUR (200 DM)	153 EUR (300 DM)	179 EUR (350 DM)
1997	112 EUR (220 DM)	112 EUR (220 DM)	153 EUR (300 DM)	179 EUR (350 DM)

년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이상
1998	112 EUR (220 DM)	112 EUR (220 DM)	153 EUR (300 DM)	179 EUR (350 DM)
1999	118 EUR (250 DM)	118 EUR (250 DM)	153 EUR (300 DM)	179 EUR (350 DM)
2000	138 EUR (270 DM)	138 EUR (270 DM)	153 EUR (300 DM)	179 EUR (350 DM)
2001	138 EUR (270 DM)	138 EUR (270 DM)	153 EUR (300 DM)	179 EUR (350 DM)
2002...2008	154 EUR	154 EUR	154 EUR	179 EUR
2009	164 EUR	164 EUR	170 EUR	195 EUR
2010	184 EUR	184 EUR	190 EUR	215 EUR

자료: <http://de.wikipedia.org/wiki/Kindergel>



자료: <http://de.wikipedia.org/wiki/Kindergel>

[그림 12] 독일 아동수당의 연도별 발전과정(1975~2010)

---

#### 4) 지급기간

아동수당은 종전에는 자녀가 27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되었으나, 2007. 1. 1.부터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로 기간이 단축되었다.

#### 나. 아동수당보조금(Kindergeldzuschlag)

아동수당보조금은 빈곤한 환경 가운데 아동이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으로 기본적 생계유지는 되나, 실업급여II(Arbeitslosengeld)에 의존하지 않으면 25세 미만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생활자체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외에 아동수당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보조금을 받으려면 부모가 아동수당 청구권이 있어야 하며, 부모 소득이 생계자체로는 가능하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 기에는 부족하여야 한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총 3년간만 지급된다.

#### 다. 아동세금공제(Kinderfreibetrag)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는 것보다 아동세금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감면혜택에서 유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세금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동세금공제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과 아동세금공제는 상호배타적이어서 양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소득세 조정 차원에서 결정한다.

---

아동세금공제를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월 5,000 유로, 한부모인 경우는 월 2,500 유로 이상인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3. 기타

#### 가. 자녀의 질병 시 질병수당 및 유급휴가

부모가 둘 다 직업을 가졌을 경우, 자녀의 질병 시 누군가 아이를 간호하고 돌보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위해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을 앓게 되면 10일간 유급휴가와 함께 질병수당이 지급된다.

청구가능 기간은 최장 20일이며, 다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청구기간은 최장 50일이다. 질병수당청구는 부모 1인당 최장 25일을 초과할 수 없기에 부모가 교대로 돌볼 경우 총 50일까지 질병수당이 지급된다. 질병수당 금액은 통상 수령하는 급여의 70%이며, 순급여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사회법전」 제5권 제47조).

#### 나. 양육기간의 연금 산입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연금에 양육기간을 산입해 주는 방법이다. 출산 후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하여 연방이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부모 중 어느 쪽에 연금을 산입해 줄 것인가는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없을 시는 모(母)의 연금에 산입된다(「사회법전」 제6권 제56조 제2항).

---

## 다. 양육비 세금공제

독일은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수반한다는 인식에 따라 「소득세법」 제35a조에 의거하여 가족친화적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전의 자녀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취원시키거나 부모에게 보육을 의뢰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부모의 수입이 넉넉지 못할 경우 청소년청이 상승된 보험료를 부담한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는 자녀양육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요건은 해당되는 자녀가 14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육비가 일정액 이상임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로서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매년 774~2,548 유로를 지출한 경우 해당부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고 750유로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연간 1,548~3,048유로를 지출한 부모나 한부모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고 1,500유로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맺음말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분단 41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통일은 정치, 사회,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이질감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보장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이 보장되었던 독일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으나, 육아는 남성도 맡아서 잘 할 수 있기에 남녀 모두에게 자녀양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 중 하나가 부모휴직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여성이 직업과 육아를 큰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자녀의 육아와 보육이 전문화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적 투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여성은 물론이고 부부 모두가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장 위협적인 국가적 요소이므로 '육아와 일의 조화'라는 전통적인 가족정책을 뛰어넘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의 획기적인 육아 및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제로 모성보호, 부모휴직, 아동수당(아동수당지원금), 보육법,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 및 추가하였다. 이와같이 국가가 주체가 되는 독일의 가족정책은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유아원과 유치원에 취원 할 유아를 위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유아의 취원율을 높이고 부모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유아원(1~3세)과 유치원(3~5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 후 시설인 호르트(Hort)까지도 각 주의 청소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이 상호협력 하에 일원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을 하는 등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독일의 경우처럼 일원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공교육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겠다.

---

아울러 독일의 교육자 및 보육교사의 양성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유아교사를 위한 교사양성과정은 보육교사교육원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독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획일화된 교육과정, 단기간의 교육실습, 현장연계교육의 부족과 더불어 낮은 보수 및 승진기회의 제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해결방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독일의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교육이 우리나라의 보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유아교육기관들은 각 설립 주체자들의 뚜렷한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공통적으로 장애아와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혼합연령 그룹, 동작용심 중심이며, 자연친화적이고, 유아의 개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의 실태를 기술하면 상기에 고찰한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특성과 반대적인 요소가 많기에 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학부모와 가정에 있음을 법률로써도 규정하고 있고, 학부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은 단지 학부모 교육과 가정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따름인데, 이는 모든 교육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교육기관과 교육자에게 돌리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부모교육을 국가적인 육아정책차원에서 제공할 필요

---

성이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볼 때 통일 전 구동독의 보육과 유아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여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한 육아 및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하여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국가에서는 다양한 방과 후 보육(Hort)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적성과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교육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찾아야 할 필연성이 있다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연구와 상호간의 보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참고문헌

- 김은영(2005). 독일의 저출산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한신대학교.
- 윤선영(2009). PISA이후 독일의 교육개혁과 전망. 2009년도 한독교육학회 학술대회.
- 이명환(1996). 통독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황과 실제. 미래유아교육학회, 2.
- 이명환(2003).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0(4).
- 이진숙 · 신지연 · 윤나리(2010). 가족정책론. 학지사.
- 조성혜(2007).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8(3)
- 주한독일대사관(2005). 독일에 관한 모든 것. 분도출판사.
- Bundesanstalt für Arbeit(1989). *Blätter zur berufskunde, Erzieher-Erzieherin*, 2 IV A 20, Nürnberg.
-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Grund-und Struktur Datum*(1993/1994).
- Der Hessische Kulturminister(2000).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die prüfungen an den Fachschulen für Sozialpädagogik*, Wiesbaden.
- Derschau, D. V.(1979). *Die Ausbildung der Erzieher für Kindergarten, Heimerziehung und Jugendarbeit an den Fachschulen/ Fachakademien für Soziapädagogik*, diss, Marburg.

---

Deutsches Jugendinstitut(1994). *Orte für Kinder*, Auf der Suche nach neuen Wegen in der Kinderbetreuung, München.

Fisher, A.(1991). *Daten and Materialien zum Bildungswesen in der DDR*.

Grossmann, W.(1987). *Kindergarten, Eine historische-systematische Einführung in Entwicklung und Pädagogik*, Weinheim/Basel.

Grossmann, W.(1992). *Kindergarten und Pädagogik*, Beltz, Weinheim/ Basel.

Häfner, P.(2003). Wie schulfähig macht der Waldkindergarten? *Kindergarten heute*. 4/2003.

Heller, E.(2000). *Zur Entwicklung des Situationansatzes*. 한독 교육학 연구 제5권 제1호.

Herzberg(1983). *Erzieherausbildung in sechs europäischen Ländern*, München.

Hoffman, E.(1951). *Ausgewählte Schriften Die Menschenerziehung*. Berlin.

Klein und Gross(1991~1995). Berlin.

Mörsberger. H.(2000). *Der Kindergarten*.

Münder, J.(1993). *Frankfurter Lehr-und Praxiskommentar zum KJHG*, Votum Verlag, Münster.

Naumann, S.(1998). *Natürlich von Klein auf*, Ravensburger Buchverlag, Ravensburg.

---

Nietzsche, R.(1985). *Grundbuch zur bürgerlichen Gesellschaft I*, Darmstadt.

Schede, H-G.(2000). *Der Waldkindergarten auf einen Blick*, Kösel Verlag, München.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destatis.de>(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0

Statistisches Jahrbuch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1993)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9. September 2010

Statistisches Bundesamt (2010):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05, Wiesbaden 2003 und Sterbetafel, versch. Jahrgänge

Pressemitteilung Nr.249 vom 19.06.2007

Pressemitteilung Nr.427 vom 11.11.2009

Pressemitteilung Nr.409 vom 10.11.2010

Zahl der Woche Nr.036 vom 09.09.2008

<http://de.wikipedia.org/wiki/Kindergeld>

<http://www.meinchef.de>

<http://www.gehaltsvergleich.com>

---

## 이명환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유아교육학 학사·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철학박사(유아교육학 전공)

현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숲유아교육연구소 소장

## 박수연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아동학 전공)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 독일의 육아정책

발행인 • 조복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편역 • 이명환 · 박수연

발행일 • 2010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http://www.kicce.re.kr>

대표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2396-72-1 93370

##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제 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 (2006) | 유희정
- 제 2권 스웨덴의 육아정책 (2006) | 문무경
- 제 3권 호주의 보육정책 (2007) | 서문희
- 제 4권 영국의 육아정책 (2007) | 문무경
- 제 5권 미국의 육아정책 (2008) | 조은경·김은영
- 제 6권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2008) | 신나리·조혜주
- 제 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 (2009) | 이윤진·송신영
- 제 8권 프랑스의 육아정책 (2009) | 정미라·조희연·안재진
- 제 9권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2010) | 김은설·김문정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Tel. 02-398-7700 Fax. 02-730-3313



9 788992 396721  
ISBN 978-89-92396-72-1